의안번호	제 2018 - 14호
보 고 연 월 일	2018. 6. 11. (제87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제117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12명) ····· 1
3. 주요 안건 ····· 1
Ⅱ.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 1
1. 요약 ····· 1
가. 대유형 1(일반적 기준)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1
나.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 의견 불일치(소유형 1, 2일부) ····· 2
다.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2
2. 대유형 1(일반적 기준) ····· 3
가. 현행 양형기준 ····· 3
나. 소유형 1(재물손괴 등) ····· 3
다. 소유형 2~4 형량범위 검토 ····· 4
3.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 5
가. 유형 분류 ☞ 수정됨 ····· 5
나. 소유형 1(누범·특수손괴 등) 형량범위 검토 ····· 5
다. 소유형 2(누범특수손괴) 형량범위 검토 ····· 9
라. 소유형 3(문화재 특수손상) 형량범위 검토 ····· 10
4.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1
가. 현행 양형기준 ····· 11
나. 권고 형량범위 검토 ····· 11
Ⅲ.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 12
1. 요약 ····· 12

가. 양형인자 ⇨ 의견일치 ····· 12
나. 집행유예 기준 ⇨ 의견일치 ····· 12
2. 대유형 1(일반적 기준) ····· 13
가. 현행 양형인자 ····· 13
나. 검토 결과 ⇨ 일부 수정(의견 일치) ····· 13
3.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 14
가. 현행 양형인자 ····· 14
나. 검토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14
4.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5
가. 현행 양형인자 ····· 15
나. 검토 결과 ⇨ 일부 수정(의견 일치) ····· 15
5. 집행유예 기준 ····· 16
가. 현행 집행유예 기준 ····· 16
나. 검토 결과 ⇨ 일부 수정(의견 일치) ····· 16
Ⅳ.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 17
1. 요약 ····· 17
2. 수정된 유형 분류 ····· 19
가.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19
나.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19
다. 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19
나.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9
3. 수정된 유형 분류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0
가. 대유형 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20
나.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26
다.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29
라.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32

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 34
1. 요약 ····· 34
2. 대유형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양형인자 ····· 36
가. 현행 양형인자 ····· 36
나. 일반감경인자인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질적 변경과 중복 적용 여부 ⇨ 의견 불일치 ····· 37
다.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 범위 : 소유형 4, 5 제외 ⇨ 의견 일치 ····· 39
라. 특별가중인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할지 여부(대유형 2~4의 특별가중인자와도 공통됨) ⇨ 의견 불일치 ····· 39
3.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양형인자 ····· 41
가. 현행 양형인자 ····· 41
나.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42
다. 특별가중인자인「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 범위 : 소유형3 중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 의견 일치 ··· 42
4.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의 요구·취득한 경우) 양형인자 ····· 44
가. 현행 양형인자 ····· 44
나. 특별가중인자인「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범위 : 소유형 2, 3은 제외 ⇨ 의견 일치 ····· 45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인질강요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인질강요에 한함)를 특별감경인자로 각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45
5.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양형인자 · 47

가. 현행 양형인자 ····· 47
나. 특별가중인자인「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범위 : 제2유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는 제외 ⇨ 의견 일치 ····· 47
다.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48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2인 이상 공동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각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49
Ⅵ.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범죄군명] 논의 결과 ····· 50
1. 요약 ····· 50
2. 현행 집행유예 기준 ····· 51
3.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인「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문구 수정 ⇨ 의견 일치 ····· 52
4. '경미한 상해'를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52
5.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는 제외 ⇨ 추가 검토 결과 수정 불필요 ····· 52
6.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53
7.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54
8.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인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로 변경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 54
Ⅶ.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 변경 논의 결과 ····· 55
1. 다수 의견(11인) : 범죄군 명칭을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약취·유인·인신

매매·인질범죄'로 변경 ····· 55
2. 소수 의견(1인) : 현행 유지 ····· 55
Ⅷ.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의견 불일치 ····· 56
1. 다수 의견(9인) ····· 56
2. 소수 의견(2인) ····· 56
Ⅸ. 향후 일정 ····· 56

【별첨】

- 송오섭,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 이용, 차호동,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 전휴재,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2"
- 전휴재,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 추가 검토"
- 이용, 차호동,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 송오섭,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검토"
- 이용, 차호동,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I. 제117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5. 28.(월) 15:00 ~ 20: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희연, 범현, 송오섭, 이용, 이진국, 전휴재, 차호동,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권상진(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참관)

3. 주요 안건

○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II.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요약

가. 대유형 1(일반적 기준) ⇨ 현행 유지(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나.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 의견 불일치(소유형 1, 2 일부)

▣ 다수 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 · 특수손괴 등	~~4월~~ - ~~10월~~8월	~~8월~~ 6월- ~~1년6월~~1년2월	~~1년~~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2년~~1년6월	~~1년~~10월-~~3년~~2년 6월	1년6월~~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3년	2년-4년	3년-7년

▣ 소수 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 · 특수손괴 등	~~4월~~ - ~~10월~~8월	~~8월~~ 6월- ~~1년6월~~1년2월	~~1년~~10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2년~~1년6월	1년-~~3년~~2년6월	1년6월~~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3년	2년-4년	3년-7년

다.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현행 유지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6월-1년6월	10월-2년6월	1년6월-4년6월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2. 대유형 1(일반적 기준)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나. 소유형 1(재물손괴 등)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제1유형 재물손괴 등	재물손괴 등	형법 제366조 (3년↓)
	중손괴	형법 제368조 제1항 (1년↑~10년↓)
	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2항(4년 6월↓)

(2)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형량 분포

(가)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2	3	4	5	6	8	10	12			
감경	수	1	5	55	3	19	2	0	0	85	4.49	52.8
	비율	1.2	5.9	64.7	3.5	22.4	2.4	0.0	0.0	100.0		
기본	수	1	0	30	2	27	6	1	1	68	5.35	42.2
	비율	1.5	0.0	44.1	2.9	39.7	8.8	1.5	1.5	100.0		
가중	수	0	0	0	0	0	7	1	0	8	8.25	5.0
	비율	0.0	0.0	0.0	0.0	0.0	87.5	12.5	0.0	100.0		
전체	**수**	**2**	**5**	**85**	**5**	**46**	**15**	**2**	**1**	**161**	**5.04**	**100.0**
	비율	**1.2**	**3.1**	**52.8**	**3.1**	**28.6**	**9.3**	**1.2**	**0.6**	**100.0**		

(나) 이종경합범 포함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60	
제1유형	수	2	5	112	6	140	85	26	43	4	1	20	5	3	8	1	461
	비율	0.4	1.1	24.3	1.3	30.4	18.4	5.6	9.3	0.9	0.2	4.3	1.1	0.7	1.7	0.2	100.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변경이 없고, 양형기준 준수율이 매우 높음(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의 경우 99.4%)

○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다. 소유형 2~4 형량범위 검토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제2유형 공익건조물파괴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10년↓)
	중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8조 제1항 (1년↑~10년↓)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문화재보호법 제94조 (15년 ↓)
제3유형 지정문화재손상 등	지정문화재 손상 등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2년↑)
	타인손상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3년↑, 2년↑)
제4유형 국가지정문화재손상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3년↑)
	타인손상국가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3년↑, 2년↑)

(2)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형량분포

○ 양형기준 설정 후 해당 사례 발견되지 않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변경이 없음

○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3.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가. 유형 분류 ☞ 수정됨

(1)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2) 수정된 유형 분류 ☞ 법률 개정 반영하여 상습 제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3	문화재특수손상			

나. 소유형 1(누범・특수손괴 등) 형량범위 검토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있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등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5년↓)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1년↑)
	상습재물손괴 등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1년↑)
	누범재물손괴 등	폭처법 제2조 제3항 (1년↑) (7년↓)
	특수재물손괴 등	폭처법 제3조 제1 (1년↑)

○ 변경 전 소유형 1의 구성요건은 ㉠ 특수재물손괴,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폭처법(상습재물손괴), ㉣ 폭처법(누범재물손괴), ㉤ 폭처법(특수재물손괴)

○ 법률 개정으로 ㉢ 폭처법(상습재물손괴), ㉤ 폭처법(특수재물손괴)은 소유형 1에서 제외되었고, 특수공익건조물파괴는 소유형 2에 포함시키기로 함

○ 그 결과 ㉠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 폭처법(누범재물손괴)만 소유형 1의 해당 범죄로 남게 됨. 한편, 폭처법(누범재물손괴)은 법정형이 변경됨(징역 1년↑ → 징역 7년↓)

(2) 형량분포 ☞ 현행 양형기준이 적용된 결과임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

(나) 형량분포

○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종전 준수율은 평균 93%)

단위: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5년 하반기		2016년		전체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감경	31	5.65	70	5.33	101	5.43
		기본	9	8.00	30	8.73	39	8.56
		가중	1	12.00	1	8.00	2	10.00
		합계	**41**	**6.32**	**101**	**6.37**	**142**	**6.35**

○ 2015. 9. 24. 이후 선고

- 단일범 및 동종 경합범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	3	4	5	6	8	10	12	14	16		
특수손괴	수	0	0	1	1	2	0	0	0	0	0	4	5.25
	비율	0.0	0.0	25.0	25.0	50.0	0.0	0.0	0.0	0.0	0.0	100.0	
특수재물손괴	수	0	1	36	0	52	23	8	3	1	1	125	6.31
	비율	0.0	0.8	28.8	0.0	41.6	18.4	6.4	2.4	0.8	0.8	100.0	

- 이종경합범 포함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3	4	6	8	9	10	12	14	16	18	21	24	36	42	48	60	
제1유형	수	1	37	63	93	2	37	50	5	2	15	1	12	3	1	2	1	325
	비율	0.3	11.4	19.4	28.6	0.6	11.4	15.4	1.5	0.6	4.6	0.3	3.7	0.9	0.3	0.6	0.3	100.0

(3)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필요성

○ 종전 형량범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유형 분류의 변경, 법정형의 하향에 따라 종전 권고 형량을 수정할 객관적 필요성 인정됨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의견 불일치

○ 논의 과정에서 주무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불일치하였던 부분이 해소되어 기본영역과 감경영역, 가중영역의 상한에 대한 형량범위 수정 방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들 사이에 이견 없음

○ 다만 가중영역의 하한에 대한 이견 존재(8월 vs. 10월)

(가) 다수 의견(7인) : 가중영역의 하한 8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 · 특수손괴 등	~~4월~~ - ~~10월~~8월	~~8월~~ 6월- ~~1년6월~~1년2월	~~1년8월~~ - 2년

○ 법정형이 대폭 하향되었으므로 가중영역의 하한 역시 종전보다 대폭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징역 10월로 하자는 의견은 현행 가중영역의 하한을 1/3 정도 낮추는 것(1년↑⇒ 8월↑)이 법정형 변경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는 것이나, 종전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임에 반해, 현재의 법정형은 최고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임. ⇨ 가중영역의 하한을 4개월 정도 낮추더라도 지나친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 없음

○ 2015. 9. 24. 이후 선고된 사건의 경우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징역

8월 이상 10월 미만이 선고된 사건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은 18.4%이고, 이종경합범을 포함하는 경우 29.2%. 가중영역의 하한을 10월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

○ 죄질 및 법정형이 유사한 일반체포·감금[법정형 최고 10년 이하(존속체포·감금) 또는 15년 이하(공동존속체포·감금)]의 경우 가중영역의 하한이 8월로, 일반상해[법정형 최고 10년 이하(존속상해) 또는 15년 이하(공동존속상해)]의 경우 가중영역 하한은 6월로 되어 있음

(나) 소수 의견(5인) : 가중영역의 하한 10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4월~~ - ~~10월~~8월	~~8월~~ 6월- ~~1년6월~~1년2월	~~1년~~10월 - 2년

○ 감경의 하한과 가중의 상한의 경우에 통계적인 근거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조정함이 타당함. 누범손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로, 특수손괴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각각 하향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유사 범죄군의 형량범위를 참작해야 함

○ 법정형 기준으로, 누범손괴 7년 이하, 특수손괴 5년 이하이므로 해당 법정형과 유사한 범죄군의 형량범위를 참작하되,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각 하한은 5년 이하 유사범죄의 하한 형량보다는 높거나 같고 각 상한은 7년 이하 유사범죄의 상한 형량보다는 낮거나 같도록 설정함이 타당함

- 법정형 5년 이하 유사범죄군의 가중영역 하한 중 가장 낮은 것이 징역 10월

○ 현행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중영역의 하한을 8월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은 법정형의 변경 정도에 비하여 지나친 하향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다. 소유형 2(누범특수손괴) 형량범위 검토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있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제2유형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상습특수재물손괴 등~~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2년↑)~~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처법 제3조 제4항 ~~(1년↑)~~ (1년↑ 12년↓)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1년↑)

○ 누범특수재물손괴의 법정형이 하향됨

○ 현행 양형기준의 소유형 1에 포함된 특수공익건조물파괴가 소유형 2에 포함됨

(2) 형량분포 ☞ 양형기준 설정 후 해당 사례 없음

○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필요성

○ 종전 형량범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유형 분류의 변경, 법정형의 하향에 따라 종전 권고 형량을 수정할 객관적 필요성 인정됨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의견 불일치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 기본영역의 상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기본영역의 하한에 대한 이견 존재(10월 vs. 1년)

(가) 다수 의견(10인) : 기본영역 하한 10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누범특수손괴	6월 - ~~2년~~1년6월	~~1년~~10월-~~3년~~2년6월	1년6월~~2년~~-4년

○ 이번 유형 분류 수정을 통하여 소유형 1에서 소유형 2로 옮겨진 특

수공익건조물파괴의 종전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의 하한이 8월)를 고려할 필요 있음. 다만 대유형 1(일반적 기준) 중 소유형 2(공익건조물파괴)와의 형량범위 균형을 참작하여야 함

○ 소유형 2에 대한 최초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가 되었던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은 이번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종전 '징역 1년~3년'을 '징역 10월~2년 6월'로 변경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던 점 반영

○ 소수 의견에 의할 경우 징역 2년 이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기본영역의 하한을 법정형의 하향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함

○ 양형기준은 작량감경 등이 반영된 처단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기본영역의 하한이 낮게 설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음

(나) 소수 의견(2인) : 기본영역 하한 1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누범특수손괴	6월 - ~~2년~~1년6월	1년-~~3년~~2년6월	1년6월~~2년~~-4년

○ 누범특수손괴는 징역 2년 이상에서 징역 1년 이상 12년 이하로 법정형이 하향되기는 하였으나, 특수손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영역의 하한을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라. 소유형 3(문화재 특수손상) 형량범위 검토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 (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4년 6월↑~45년↓,3년↑~45년↓)

(2)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문화재특수손상	1년-3년	2년-4년	3년-7년

(3) 형량분포

○ 양형기준 설정 이후 해당 사례 없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변경이 없음

○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4.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6월-1년6월	10월-2년6월	1년6월-4년6월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나. 권고 형량범위 검토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2) 형량분포

○ 제1 소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3건[1](이종 경합범 포함)

○ 나머지 유형은 양형기준 설정 후 해당 사례 없음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변경이 없음

○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1) 감경영역 2건(모두 징역 8월 선고), 기본영역 1건(징역 10월 선고)

Ⅲ.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결과

1. 요약

가. 양형인자 ⇨ 의견 일치

○ 대유형 1(일반적 기준) : 서술식 기준에서 '상습'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유지

○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 현행 유지

○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형법 조문 내용에 맞추어 특별가중인자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유지

나. 집행유예 기준 ⇨ 의견 일치

○ 형법 조문 내용에 맞추어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유지

2. 대유형 1(일반적 기준)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하 생략)

나. 검토 결과 ⇨ 일부 수정(의견 일치)

○ 법률 개정으로 상습범죄가 제외되었으므로 위 서술식 기재 부분 중

괄호 안에 적힌 '상습'을 삭제

○ 나머지 양형인자의 경우 수정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

3. 대유형 2(누범·특수손괴)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검토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양형인자 수정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

4. 대유형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1, 3유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3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검토 결과 ⇨ 일부 수정(의견 일치)

○ 특별가중인자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형법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나머지 양형인자의 경우 수정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

5. 집행유예 기준

가. 현행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경미한 상해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검토 결과 ⇨ 일부 수정(의견 일치)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형법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나머지 참작사유의 경우 수정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

Ⅳ.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요약

■ 대유형 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1. 소유형1(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 ⇨ 의견 불일치

▣ 제1안 : 감경영역의 하한만 하향하고 기본, 가중영역은 현행을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4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 제2안 : 감경, 기본, 가중영역의 하한을 하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4월 - 1년6월	~~1년~~8월 - 2년6월	~~2년~~1년6월 - 4년

▣ 제3안 :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하향하고 가중영역은 현행을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4월 - 1년6월	~~1년~~8월 - 2년6월	2년 - 4년

▣ 제4안 : 모두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나머지 소유형 ⇨ 현행 유지(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4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소유형 3의 가중영역만 상향(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 · 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 · 치상 / 인질강도상해 · 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1. 소유형 1(인질강요/인질강도) ⇨ 의견 불일치

▣ 다수의견 : 가중영역의 하한을 3년 6월로 하자는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 인질강도	2년 - 3년 6월	2년 6월 - 5년	3년 6월 - 7년

▣ 소수의견 : 가중영역의 하한을 4년으로 하자는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 인질강도	2년 - 3년 6월	2년 6월 - 5년	4년 - 7년

2. 나머지 소유형 ⇨ 현행 유지(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대유형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현행 유지(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치사 / 인질치사 / 인질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수정된 유형 분류

가.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2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3	노동력 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 · 국외이송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4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			
5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			

나.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2	피약취자 등 상해			
3	피약취 · 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 · 치상 / 인질강도상해 · 치상			

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 인질강도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라.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치사 / 인질치사 / 인질강도치사			

3. 수정된 유형 분류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대유형 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 만 한 경우]

(1) 소유형 1(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 · 유인	형법 제287조	10년↓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7년↓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사람을 수수 · 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7년↓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 운송 · 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7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다) 주요통계자료(2013. 1. 1.~ 2016. 12. 31.)[2)]

○ 형량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형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42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반.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1유형	감경	수	2	4	2	1	1	0	0	0	0	0	10
			비율	20	40	20	10	10	0	0	0	0	0	100
		기본	수	4	2	0	1	2	1	0	0	0	0	10
			비율	40	20	0	10	20	10	0	0	0	0	100
		가중	수	0	3	0	0	2	0	1	0	2	0	8
			비율	0	37.5	0	0	25	0	12.5	0	25	0	100
전체			**수**	**6**	**9**	**2**	**2**	**5**	**1**	**1**	**0**	**2**	**0**	**28**
			비율	**21.4**	**32.1**	**7.1**	**7.1**	**17.9**	**3.6**	**3.6**	**0**	**7.1**	**0**	**100**

2) 단일범, 동종경합범 사건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 준수율에 관한 통계자료임[2013. 4. 5.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을 적용한 사례는 제외). 이하 통계자료도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양형기준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한 이탈

- 감경영역의 경우 20%, 기본영역의 경우 70%, 가중영역의 경우 62.5% 사건이 하한 이탈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의견 불일치

○ 각 영역의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데에는 의견 일치

○ 각 영역의 하한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이는 양형기준의 이탈 현상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서 비롯됨

○ 하향 조정에 적극적인 입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 현재 양형기준 하한의 이탈률이 매우 높고(감경영역 20%, 기본영역 70%, 가중영역 62.5%),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인자의 조정뿐 아니라 권고 형량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유형의 형량범위와 비교할 때 종전 형량범위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됨

○ 반면 하향 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 양형기준의 이탈 문제는 형량범위의 조정이 아니라 양형인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함
- 법정형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을 각각 4개월, 6개월씩이나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사건이 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논의 결과 각 영역별로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감경영역** : 하한을 징역 6월→ 징역 4월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다수 의견(9인)은 찬성, 소수 의견(3인)은 현행 유지
- **기본영역** : 하한을 징역 1년→ 징역 8월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다수 의견(7인)은 현행 유지, 소수 의견(5인)은 찬성
- **가중영역** : 하한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다수 의견(9인)은 현행 유지, 소수 의견(3인)은 찬성

○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됨

▣ 제1안 : 감경영역의 하한만 하향하고 기본, 가중영역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6월~~**4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 제2안(3인) : 감경, 기본, 가중영역의 하한을 모두 하향하는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6월~~**4월** - 1년6월	~~1년~~**8월** - 2년6월	~~2년~~**1년6월** - 4년

▣ 제3안 :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하향하고 가중영역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6월~~**4월** - 1년6월	~~1년~~**8월** - 2년6월	2년 - 4년

▣ 제4안 :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소유형 2(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 목적 약취 · 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1년~10년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1년~10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다) 주요통계자료

○ 형량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형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42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반.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	감경	수	0	1	1	2	0	0	0	0	0	0	4
			비율	0	25	25	50	0	0	0	0	0	0	100
		기본	수	0	0	0	0	1	0	0	1	2	0	4
			비율	0	0	0	0	25	0	0	25	50	0	100
		가중	수	0	0	0	0	0	0	0	1	0	0	1
			비율	0	0	0	0	0	0	0	100	0	0	100
전체			**수**	**0**	**1**	**1**	**2**	**1**	**0**	**0**	**2**	**2**	**0**	**9**
			비율	**0**	**11.1**	**11.1**	**22.2**	**11.1**	**0**	**0**	**22.2**	**22.2**	**0**	**100**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이 유사한 사건의 감경영역 하한 : 공용물파괴(징역 1년~10년), 일반물건방화(징역 1년~10년), 중상해(징역 1년~10년)의 경우 모두 감경영역의 하한을 6월로 정하고 있음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감경영역의 하한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나 하한을 이탈한 사례가 많지 않음

○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경우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3) 소유형 3(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노동력착취 · 성매매 · 성적착취 · 장기적출 목적 약취 · 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2년~15년
국외이송 목적 약취 · 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2년~15년
약취 · 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2년~15년
노동력착취 · 성매매 · 성적착취 ·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2년~15년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2년~15년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2년~15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다) 주요통계자료

○ 형량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형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42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반.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	감경	수	0	0	0	0	2	0	0	0	0	0	2
			비율	0	0	0	0	100	0	0	0	0	0	100
		기본	수	0	0	0	0	2	2	0	0	0	0	4
			비율	0	0	0	0	50	50	0	0	0	0	100
		가중	수	0	0	0	0	0	0	0	0	0	0	0
			비율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수**	**0**	**0**	**0**	**0**	**4**	**2**	**0**	**0**	**0**	**0**	**6**
			비율	**0**	**0**	**0**	**0**	**66.7**	**33.3**	**0**	**0**	**0**	**0**	**100**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한 사건이 2건으로 50%의 미준수율을 보이나 대상판결이 많지 않음.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유형[일반건조

물방화(징역 2년↑), 국내통화위조(무기 또는 징역 2년↑)]의 경우 기본영역의 하한을 징역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영역의 하한을 수정할 필요성이 적음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경우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4) 소유형4(재물 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재물 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선고 사례가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5) 소유형 5(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나.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1) 소유형 1(피약취자 등 치상)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2년 ~ 20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2) 소유형 2(피약취자 등 상해)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3년 ~ 25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3) 소유형 3(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 후 폭행 · 상해 · 감금 · 유기 · 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인질상해 · 치상	형법 제324조의3	무기 또는 5년↑
인질강도상해 · 치상	형법 제337조	무기 또는 7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 · 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 · 치상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감경/기본/가중영역의 상한을 모두 상향 조정(의견 일치)

○ 유형 분류 변경으로 인질강도상해·치상죄가 포함됨에 따라 형량범위의 수정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인질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상해·치상죄와 동일하게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강도상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강도범죄 대유형 2(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인질강도상해·치상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으로 같은 소유형 3의 약취·유인 후 13세미만 미성년자 상해·치상죄나 인질상해·치상죄의 징역 5년보다 법정형이 높은 점, 특수강도로 인한 강도상해·치상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이 10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유형 3의 각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높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인질치상 등에 대한 형량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각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고 형량범위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치상 / 인질강도상해·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9년

다.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1) 소유형 1(인질강요·인질강도)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3년↑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3년↑

(나) 현행 형량범위[3)]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2년 - 3년6월	2년6월 - 4년	3년6월 - 5년6월

(다) 주요 통계자료

○ 인질강요 : 1건(인천지법 2015고합838, 징역 2년)

○ 인질강도의 형량분포[4)]

단위: 명, %

구분		형량(월)								전체
		18	24	30	36	42	48	54	60	
인질강도	수	11	6	3	2	0	2	0	1	25
	비율	44	24	12	8	0	8	0	4	100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의견 불일치

○ 감경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상한을 각각 징역 4년에서 징역 5년으로, 징역 5년 6월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에는 이견 없음.

○ 다만 가중영역의 하한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3년 6월 vs. 4년)

---

3) 현행 양형기준은 별도의 유형분류 없이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를 소유형 1에 포섭하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도록 함

4) 2009년 이후 인질강도죄를 단일범, 동종경합범으로 하여 선고된 사건 25건(피고인 수 기준)을 대상으로 형량분포 정리

▣ 다수 의견(7인) : 가중영역 하한 3년 6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인질강도	2년 - 3년 6월	2년 6월 - 5년	3년 6월 - 7년

○ 인질강요, 인질강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의 양형기준 서술식에 따른 형량범위를 수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다만 일반강도보다 죄질, 위험성 등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보다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소 올릴 필요성은 있으나 하한까지 상향할 필요성은 없음

○ 현행에 의하더라도 강도죄의 가중영역 하한보다 높은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음

- 강도범죄의 대유형1(일반적 기준)의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소수 의견(5인) : 가중영역 하한 4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인질강도	2년 - 3년 6월	2년 6월 - 5년	4년 - 7년

○ 인질강요·인질강도는 행위태양의 측면상 인질의 석방 등을 대가로 재물을 강취 또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반강도의 행위 태양인 폭행·협박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 인질강요는 3년 이상의 법정형 범죄 중 강간죄와, 인질강도는 일반강도 및 일반공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인질강요나 인질강도는 일반강도 보다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모두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3년 이상 법정형의 형량범위 중 일반강도 다음으로 높은 4년으로 가중영역의 하한을 정함이 타당함

○ 다른 범죄와의 형량범위 비교

순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강간(13세 이상)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일반공갈(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2) 소유형 2(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3) 소유형 3(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라.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2) 소유형 1(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가) 범죄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무기 또는 10년↑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무기 또는 10년↑

(나) 현행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다) 주요 통계자료

○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인질강도치사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강도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현행 소유형 2의 양형기준과 같음

○ 그 밖에 현행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음

V.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1. 요약

가. 의견 불일치

(1) 대유형 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현행 일반감경인자인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할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중복 적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특별가중인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할지 여부

(2)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할지 여부

○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3)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할지 여부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인질강요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인질강요에 한함)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4)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할지 여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2인 이상 공동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나. 의견 일치

(1) 대유형 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 범위 : 소유형 4, 5 제외

○ 의견 불일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는 현행 유지

(2)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 범위 : 소유형 3 중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 의견 불일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는 현행 유지

(3)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범위 : 소유형 2, 3 제외

○ 의견 불일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는 현행 유지

(4)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범위 : 소유형 2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는 제외

○ 의견 불일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는 현행 유지

2. 대유형1[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양형인자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나. 일반감경인자인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질적 변경과 중복 적용 여부 ⇨ 의견 불일치

(1)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가) 다수 의견(11인) : 특별감경인자로 변경

○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사건 16건 중 9건(56.3%)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로서 그 판결문에서는 대부분 형의 감경사유로 삼음(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음)

○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균형이 맞지 않음

○ 따라서 특별감경인자로 질적 구분을 변경하되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수정

○ 이에 대하여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별도의 양형인자로 규정함이 타당하는 별개 의견 있음

(나) 소수 의견(1인) : 현행 유지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육자가 지정되거나 친권상실이 선고되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법에 대한 경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이를 수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

(2)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중복 적용의 허용 여부

(가) 다수 의견(11인) : 중복 적용 불허

○ 실질적으로 하나인 양형요소가 두 양형인자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중평가의 방지를 위해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

(나) 소수 의견(1인) : 중복 적용 허용

○ 이중평가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야 함

(3)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중복 적용의 허용 여부

(가) 다수 의견(10인) : 중복 적용 허용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주범을 제외한 공범에 관해 행위의 분담 정도나 가담 동기를 감안하여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신분에 해당하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과는 무관한 별도의 양형요소여서 중복 적용을 허용함이 타당함

○ 현재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독립된 양형인자로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양형인자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공범 등 다수인의 범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중평가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야 함

(나) 소수 의견(2인) : 중복 적용 불허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면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 산정에 교란을 초래할 수 있음

다.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 범위 : 소유형 4, 5 제외 ⇨ 의견 일치

○ 대유형 1중 소유형 4, 5의 경우 특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됨

○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형기준에서 추가로 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양형인자의 이중 평가 문제 발생

○ 따라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가중인자로 하는 경우에서 소유형 4, 5는 제외함이 타당함

라. 특별가중인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할지 여부(대유형 2~4의 특별가중인자와도 공통됨)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10인) : 현행 유지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양형인자의 정의상 연령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경우를 포함. 현행 양형인자의 앞부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부분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변경되면 결국 연령이 13세 미만인지를 묻지 않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모든 경우가 특별가중인자에 포섭될 수 있음

○ 이는 기본범죄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권고형량범위가 사실상 모두 가중영역으로 가게 되는 특이한 결과를 가져옴

○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서 '연령'을 삭제하면 '신체 또는 정신장애'만 남게 되어 현행 양형인자와 사실상 같게 되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가할 필요는 적다고 보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양형인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양형인자의 정의상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순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

인 경우'로 규정된 현행 요건의 적용을 완화시켜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2) 소수 의견(2인) : '범행에 취약한 경우'로 변경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국한되는 범죄 이외의 범죄들의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고령의 노인을 비롯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약취 등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존하며 이를 약취 등 범죄군의 공통된 양형인자로 조정함이 상당

○ 살인, 성범죄, 강도, 폭력범죄, 공갈, 방화, 체포·감금,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의 경우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3. 대유형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양형인자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나.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11인) : 추가

○ 결과적 가중범 또는 기본범죄와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공통적임(예를 들어 폭행치상,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강제추행상해 및 강제추행치상, 강간상해 및 강간치상, 체포·감금치상 등)

○ 피약취자 등 상해·치상에서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더욱이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음

○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고, 그 정의 규정을 신설하되, 다른 범죄군의 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로 기재

(나) 소수 의견(1인) : 추가×

○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여야 할 규범적, 통계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음

다. 특별가중인자인「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 범위 : 소유형 3 중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 의견 일치

○ 대유형 2 중 소유형 3의 경우 특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 특가법 제5조의2 제3항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 상해, 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형기준에서 추가로 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 적용에 해당됨

4. 대유형 3(약취·유인 후 강요, 재물 등의 요구·취득한 경우) 양형인자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나.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범위 : 소유형 2, 3은 제외 ⇨ 의견 일치

○ 대유형 3중 소유형 2, 3의 경우 특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

○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유형 2, 3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추가로 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인 적용에 해당됨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인질강요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인질강요에 한함)를 특별감경인자로 각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10인) : 추가×

○ 현행 양형기준에도 서술식으로 인질강요 범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양형인자를 추가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인질강요는 강요죄가 아닌 약취·유인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합범임. 인질강도에서 강도죄의 특유한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질강요에서도 강요죄의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 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체포를 면하거나 교도소 등 구금시설 탈주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이 인질강요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인지 의문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인질강요에서 '권리행사의 수

단'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기존의 특별감경인자로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포섭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함

○ 추후 사례가 축적되면, 인질강요죄의 판결례에서 공통되는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고유한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2) 소수 의견(2인) : 추가

○ 인질강요는 본질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행위태양이 폭행·협박이 아닌 인질을 수단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형인자 결정시 기본적으로 강요죄의 양형인자를 고려하고, 대유형 3의 다른 범죄와 보호법익이나 범죄성격이 상이한데서 비롯된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질강요죄는 입법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체포를 면하거나 구속된 공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범행의 경우에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음

○ 한편, 강요죄의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였고, 그 사례로 예시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 등의 경우에 감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됨

5. 대유형 4(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가. 현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적용범위 : 제2유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는 제외

⇨ 의견 일치

○ 대유형 4의 소유형 2 중 미성년자약취·유인치사의 경우 특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

○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추가로 가중인

자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 적용에 해당됨

다.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9인) : 추가×

○ 현행 양형기준상 '치상'(2유형)에는 있고 '치사'(4유형)에는 없는 특별가중인자에는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② 범행의 조직적 분담, ③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의 3가지가 있고, 이는 모두 행위요소로 위험성, 다수범의 관여,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반가치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에 따라 법정형 및 권고 형량범위도 대폭 상향되므로 '치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요소 관련 가중인자 중 꼭 필요한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강간치상과 강간치사(양형기준책자 32면, 35면) / 강도치상과 강도치사(양형기준책자 55면, 56면)

○ 치상과 치사 등 결과적가중범의 범죄에서 행위요소 관련 가중인자 설정에 관한 양형기준의 태도를 관철한다면, 결과반가치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 '피약취자 등 치상'(2유형)과 '피약취자 등 치사'(4유형)의 가중인자를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는 적다고 보임

(2) 소수 의견(3인) : 추가

○ 대유형 1~대유형 3의 경우에는 본 양형인자가 특별가중인자임에도 대유형 4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양형위원회의에서 그에 대한 논의도 없었음

○ 특히 대유형 4는 대유형 3과 범죄구조가 동일하고 그 결과만이 가중된 형태이므로 대유형 3에 적용되는 가중인자가 대유형 4에서 제외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은 대유형 4의 약

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함

○ 다만 특가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소유형 2는 제외되므로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유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로 규정함이 상당함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2인 이상 공동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각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10인) : 추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와 동일함

(2) 소수 의견(2인) : 추가

○ 대유형 1~3의 경우에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이고, "2인 이상 공동범행"이 일반가중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유형 4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 인자들이 특별 또는 일반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해서 자행될 우려가 크고, 세계주의를 채택(형법 제396조의 2)할 만큼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조직간의 연계 가능성도 있음. 실제로 국제적 언론에 의해서 그러한 범죄의 비인륜적 특성이 조명된 범죄일 뿐 아니라 그 범죄 중에서도 대유형 4는 대유형 2보다 결과반가치가 더 중하며 약취 등 범죄군 중 가장 중한 결과반가치가 나타나는 유형인만큼 위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성이 높음

○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양형인자가 존재할 때 통계적·경험적으로 의미 있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일반가중인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Ⅵ.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범죄군명] 논의 결과

1. 요약

가. 의견 불일치

○ ‘범행에 취약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경미한 상해’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수정할지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제외할지 여부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인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로 수정할지 여부

나. 의견 일치

○ 의견 불일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참작사유는 현행 유지

2. 현행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인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문구 수정 ⇨ 의견 일치

○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형인자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문구를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수정

4. '경미한 상해'를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11인) : 추가

○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를 추가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준에도 이를 반영함이 타당함

나. 소수 의견(1인) : 추가×

○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준에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5.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는 제외 ⇨ 추가 검토 결과 수정 불필요

○ 전문위원 회의 시에는 주무전문위원이 특별가중인자의 수정에 맞추어 주요 참작사유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대 의견 없었음

○ 그러나 전문위원 회의 후 안건 상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되어 주무전문위원들이 추가 검토한 결과 이중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름

- 연령에 의한 형의 가중이 구성요건상 반영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다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여 양형인자 부분에서는 이를 수정하였으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이러한 이중평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6.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9인) : 현행 유지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합의, 처벌불원 등과 함께 피해회복에 관한 양형요소로 2018. 7.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의 주제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 그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나 실익은 적다고 보임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살인미수죄의 집행유예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된 요소가 아님

(2) 소수 의견(3인) : 제외

○ 약취·유인범죄군 이전에 설정된 범죄군의 경우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정책적 고려에서 "처벌불원"에 상응하는 인자로 도입하였고, 약취·유인범죄군의 경우에도 역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였음

- 대유형 1~3에서는 "처벌불원"만이 특별감경인자이고, 대유형 4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개 대유형에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특별감경인자임

○ 사망 이외의 경우도 동 양형인자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사이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임

7.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10인) : 불추가

○ 양형인자 수정 검토 부분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기준에 이를 반영할 필요 없음

(2) 소수 의견(2인) : 추가

○ 양형인자 부분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8.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인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로 변경할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10인) : 현행 유지

○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발견되지 않음

(2) 소수 의견(2인) : 변경

○ 양형인자 부분에서 '2인 이상 공동범행'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추가하여야 하므로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Ⅶ.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 변경 논의 결과

1. 다수 의견(11인) : 범죄군 명칭을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인질범죄’로 변경

○ 인질강요, 인질강도 등 인질범죄가 유형 분류 수정에 따라 추가된 이상 양형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군 명을 변경함이 바람직함

2. 소수 의견(1인) : 현행 유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와 인질범죄는 이질적이고, 인질범죄는 향후 양형기준 수정에 따라 다른 범죄군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

○ 이용자 편의는 양형기준 책자 앞부분에 별도 색인을 추가하는 방안 등으로 해결 가능

Ⅷ.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의견 불일치[5]

1. 다수 의견(9인)

○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됨

○ 일부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도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상세한 내용은 송오섭 주무위원의 검토보고서 참조

2. 소수 의견(2인)

○ 현재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 선택의 재량이 제한되고 형이 부당히 가벼워질 수 있으므로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이용 주무위원의 검토보고서 참조

Ⅸ. 향후 일정

○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일시 : 2018. 7. 9.(월) 15:00~

5) 김혜경 전문위원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이 부분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음